

광주고등법원 2020. 5. 7 선고 2019나2560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]

재판경과

광주고등법원 2020. 5. 7 선고 2019나25607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19. 12. 12 선고 2019가합52695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A

피고, 항소인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

담당변호사 김지윤, 박덕희

변론 종결 2020. 4. 9.

판결 선고 2020. 5. 7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가합52695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피고는 원고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7. 5. 26. 접수 제914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지하실 및 2층 전부, 1층 357m² 중 같은 목록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80m²를 인도하라.

[항소취지]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김무신

판사김동완

판사위광하

별지